

지역경제교육센터 공모

「경제교육지원법」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경제교육 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30일
재정경제부장관

1 공모 개요

☐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근거 :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1항

제9조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역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☐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 :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3항

제9조 ③ 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
2.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
3.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
4.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
5.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
6.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☐ 공모 지역 : 16개 지역

- 시·도별 지정(16개) :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전남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경남, 제주

* 경제교육지원법

제9조 ②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·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.

□ 지정의 유효기간 : 3년

○ '27. 1. 1일 ~ '29. 12. 31일(위탁계약은 1년 단위 실시)

*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* 경제교육지원법

제13조(지정취소 등)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경제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2.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
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□ 지정기관에 대한 지원관련 : 경제교육지원법 제9조 제4항

제9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 지정요건 및 고려사항

□ 지정요건 :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4항

제7조 ④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공익을 위하여 경제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
2. 교육내용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이 아닐 것
3. 교육대상의 2분의 1 이상이 지역 거주자일 것

□ 지정시 고려사항 :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5항

제7조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한다.

1.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
2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권역의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
3.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능력

3 심사기준

□ 응모기관의 전문성 및 경제교육 거점 가능성(20점)

- 경제교육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
- 지역경제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

□ 교육사업 수행 역량(30점)

-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수준
- 온·오프라인 경제교육을 위한 시설·장비 확보 수준
- 재원확보 방안의 현실성 및 사업비 관리 능력

□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(50점)

- 교육생 확보 및 관리계획
-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실용성·다양성·적절성
- 지역경제교육단체와의 협력 계획

* 총점 100점으로 종합 평가하며, 세부 평가방법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

4

신청서 제출

☐ 제출기간 : 2026년 9월 7일 18:00까지

* 우편접수 모두 당일 18:00까지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접수분에 한함
(분실 위험으로 우체국등기, 우체국택배 접수로 진행)

☐ 제출서류

-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
- 정관, 법인등기부 등본(기타 기관 소개자료 등)
- 사업계획서(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)
-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
-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

☐ 제출방법 : 우편 접수(원본 제출)* 후 공문(권장) 또는 전자우편
(seoheewon@korea.kr)으로 제출

* 분실 위험으로 인하여 우체국 등기, 우체국 택배로 접수 진행

☐ 제출처 :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

- 우편접수 : (3011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, 정부세종청사 중앙동
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
(인쇄물 2부 우송)

5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

□ 추진일정

○ 응모기간 : '26.7.30(목) ~ 9.7(월)(40일간)

○ 서류심사 및 선정기관 발표 : '26.11월

○ '27년 사업 개시 : '27.1월

*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

□ 행정사항

○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추후 허위사실 발견될 경우 등에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신청기관은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역할 및 지정요건 등을 고려하여 접수 바람

○ 서류심사 결과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할 수 있음

○ 문의 : 재정경제부 경제교육정책팀 (044-215-2553)

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신청서				
신청인	대표자		고유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	명칭			
	전화		F A X	
	주소 (인터넷 주소 포함)	(우편번호:) (인터넷 주소:)		
사업개요	사업추진계획	1.		
		2.		
		3.		
	사업비	백만원	국비	천원(%)
			지방비	천원(%)
			자부담	천원(%)
담당자	직위: 성명:	전화 (휴대폰)		
		E-mail		
「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 2026년 월 일 신청인: (서명 또는 인) 재정경제부장관 귀하				
< 구비서류 > 1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계획서(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합니다) 3. 경제교육인력과 그 밖의 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4.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※ 2,3,4는 별첨양식에 따라 통합 작성				수수료 없음

경제교육 사업계획서

※ 주어진 양식에 맞춰 작성하되, A4용지 15매 이내로 작성할 것

I. 기관 개요(글자크기 15p, 이하동일)

1.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(글자크기 13p, 이하동일)

○ (글자크기 12p, 이하동일)

○

- * 설립목적, 기관성격(영리법인, 비영리법인, 재단법인, 사단법인 등), 주요연혁, 기본사업 내용, 지역내에서 기관의 역할·인지도·위상 등

2. 조직 및 예산 현황

- * 조직도·임직원 정원·현원·기관장 등 임원진 현황, 예산현황(최근 3년간)

3. 경제교육사업 현황

- * 최근 3년간 경제교육 실적 및 성과(교육대상별 경제교육실적,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활용 실적 등)
- * 지역단체 등과의 연계·협력 여부(지역내 경제교육단체 등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현황, 지역단위 협의체 구성·운영 등)

II. 경제교육사업 수행 역량

1. 전담 조직·인력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

- * 경제교육 전담부서 구성·운영 현황
- * 경제교육 전담인력 및 전문성 확보 여부(요약표 작성) 및 향후 활용계획
- * 경제교육 강사 보유현황(요약표 작성) 및 활용계획

<전담인력 현황>

성 명	소 속	주요경력	경제교육 전문성

<경제교육 강사 보유 현황>

성 명	소 속	주요경력	강의 경력

2. 시설·장비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

- * 강의장·강의도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보유현황(요약표 작성) 및 운용계획

<시설·장비 현황>

시설·장비명	보유현황	운용현황

3. 재정운용계획

- * 경제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확보 방안(지방비 및 민간재원을 중심으로 기술)
- * 정부회계기준에 의한 사업비 관리 능력

III. 경제교육사업 추진계획

1. 추진계획 개요

- * 향후 3년간 중점 교육방향
- * 향후 3년간 학생·교사·취약계층 등 교육대상별 프로그램 운영계획, 교육규모 목표치(요약표 작성)

<교육계획>

대상	교육명	교육내용	교육횟수 및 인원

2. 교육생 확보 및 관리계획

- * 교육생 모집 및 유치방안
- * 교육생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등 사후관리 계획

3. 프로그램·교재 개발 및 운영계획

- * 경제교육 프로그램별 개발계획
 - 교육목표, 적용시기, 교육방법(강의식·체험식·강의식+체험식 등), 세부교육내용(계층·연령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내용 등)
- * 경제교육 교재 개발계획

4. 지역 협의회 등 경제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계획

- * 취약·소외계층 경제교육강화, 디지털 경제교육 확산 및 기타 경제교육을 위한 지자체·지역 민간 경제교육단체 등과의 협력망 운영 및 협업체계
 - 교육수요 발굴, 홍보활동, 교육인프라 교류, 교육프로그램 개발·운영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계획

IV. 기타 제안사항

- * I, II, III 항목 이외의 영역에 대해 기술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로이 작성